

우리 중재법의 개정방향과 1996년 잉글랜드 중재법

강 병 근*

- I. 들어가는 말
- II. 1996년 잉글랜드 중재법
- III. 우리 중재법과의 비교
 - 1. 중재법의 목적
 - 2.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
 - 3. 직소금지
 - 4. 중재인의 선정
 - 5. 중재절차
 - 6. 법원의 협조
 - 7. 중재인의 관할권 판단
 - 8. 중재판정
 - 9. 중재비용
 - 10. 중재판정 취소의 소
 - 11.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 I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중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재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매우 중요

* 한국 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하다. 중재발전에 필요한 요소로서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중재법'이 중요하다. 중재법이 단순히 법률가들의 전유물로서 간주되기보다는 중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중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침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영국의 잉글랜드는 그 동안 산재되어 있던 중재관련법을 단일법으로 만들어 세계 중재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 잉글랜드는 과거 1979년 중재법을 제정하면서 그 동안 관련업계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던 법률조회절차(stated case procedure)를 폐지하였다.¹⁾ 1975년 중재법은 영국이 1958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이를 국내법으로 계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전의 1950년 법도 과거 산발적, 임기응변적으로 제정해 온 중재관련 법규정들을 한데 묶은 것이었다. 이렇게 중재관련법이 분산됨으로써 이용자들, 특히 외국 이용자들이 잉글랜드 중재법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1996년 중재법은 그 동안 발달해 온 중재관련 관례법을 성문법으로 만들고, 1950년, 1975년, 1979년 법들을 한데 모으면서, 아울러, 1985년 모델법²⁾ 입장에서 국내중재법 자체를 쉽게 만들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중재

- 1) 법률조회제도는 1972년 법원행정법(1972 Administration of Justice Act)에 의해 스코틀랜드에 이식되었다. 그 후, 잉글랜드는 1979년 중재법에서 이 제도를 폐기하였고, 스코틀랜드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1985년 UNCITRAL 모델법은 Law Reform (Miscellaneous Provisions)(Scotland) Act 1990 에 의해 국내법이 되었다. 이 1990년 법에 의해 스코틀랜드 지역에 모델법이 계수되면서 이 법 제5조에 따라 1990년 법이 적용되는 중재의 경우 스코틀랜드 법원이 모델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국내중재에서 적용되는 1972년 법에 따른 법률조회제도는 국제중재의 경우 적용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Lord Dervaird, "The Position in Scotland," delivered i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eform of Commercial Arbitration Procedures, London, 17th and 18th February 1994, 참조. 그리고, 이번 1996 잉글랜드 중재법 제정에 맞추어 제출된 스코틀랜드 중재법안 제29조에서는 명시적으로 stated case procedure 를 규정한 1972년 법의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Scottish Advisory Committee on Arbitration Law, Report to the Lord Advocate on Legislation for Domestic Arbitration in Scotland, 1996.
- 2) 모델법은 1986년 캐나다 연방법(Federal Commercial Arbitration Act)으로 계수되었고, 캐나다 각 주법도 역시 모델법에 바탕한 중재법을 입법하였다. 1987년 키프로스, 1988년 불가리아, 니이지리아, 1989년 호주연방법, 홍콩, 1990년 스코틀랜드, 1993년 페루, 버뮤다, 러시아 연방, 멕시코, 튀니지, 1994년 예집트, 우크라이나 등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1988), 코네티컷(1989), 플로리다(1988), 조지아(1989), 북캘리포니아(1991), 오

를 이용하고자 하였을 때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그 특색이다.” 과거, 잉글랜드가 1979년 법을 제정한 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중재법 개정, 제정 붐이 일기 시작하였는데⁴⁾, 현재, 서유럽국가들간에는 국내 중재법에 관한 한 상당부분에서 1985년 모델법 체제로 균일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아시아 국가들⁵⁾, 중동국가들, 동유럽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⁶⁾ 다시 잉글랜드가 이번에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여타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실, 이번 잉글랜드 법이 있기까지, 이웃 형제국인 스코틀랜드와 중재법 제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교거리가 되었다. 1985년 모델법이 유엔에서 채택된 후, 영국에서는 이 법을 계수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스코틀랜드의 법제도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 이들 지역에 각기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9년 이들 위원회는 중재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른 입장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스코틀랜드에는 국제중재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고, 최근 잉글랜드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1996년 중재법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⁷⁾ 잉글랜드와 여타 지역에 적용이 되는 1996년 중재법을 보게 된 스코틀랜드도 국내중재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66년 민사소송법에서 삭제되었다가 단행법전으로 소생한 중재법을 아직도 개정을 못하고 있으며, 1985년 모델법을 기본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중재법 개정, 제정 붐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왕성히 논의되었던 우리 중재법 개정논의도 어느 사이엔가 잠잠해졌다. 국가정책으로 주창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 구호나 실천노력들이, 중재분야에서만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하이오(1991), 텍사스(1989) 주 등이 모델법을 중심으로 자기 주의 중재법을 입법하였다.

3) Margaret Rutherford, “Fair, speedy and cost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1996), SJ 170; House of Commons, Weekly Hansard, Issue No. 1723, p.1308.

4) Adam Samuel, “Arbitration in Western Europe — A Generation of Reform”(1991), Arb.Int. 319.

5) Michael Pryle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1995), ICSID Rev.-FILJ 129.

6) Arthur Marnott, “The Politics of Arbitration Reform”(1995), 14 CJQ 125

7) John Steyn, “England’s Response to the UNCITRAL Model Law of Arbitration”(1994), Arb.Int. 1.

것이 현실이다. 유럽 각국의 중재법 개정논의를 보면, 우리 중재법 개정의 방향이 보이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예를 너무 쉽게 따르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침, 중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중재법이 개정되었기에, 이 법의 규정들과, 우리법들을 비교하면서, 새로이 중재법 개정을 주장해보고자 한다.⁸⁾

II. 1996년 잉글랜드 중재법

이번 1996년 잉글랜드 중재법(이하, '1996년 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1950년, 1975년, 1979년 중재법을 통폐합하고,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중재관련 문제 등에 관한 입법을 하였기에, 거의 100조가 넘는 법이 되었다. 1996년 법의 특색은, 그 동안 분산되어 있던 각종 법을 통합하면서, 1989년에 받아 들이지 않았던 모델법 체계를 많이 반영한 점이 특색이다. 1996년 법에서는 1950년 법의 일부 규정은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였으며, 영국 전역에 효력이 미쳤던 1975년 중재법은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만 효력이 미치고, 여타 지역에서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1996년 법의 특색은 이 법 이용자가 외국인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고, 국내중재합의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2장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외국인들이 이용하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 이외에도, 그 동안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분쟁해결방식으로 활용되었던 '중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⁹⁾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과 관련해서는 제3장에 관련 규정을 두어서, 여기에서 1975년 중재법을 흡수함으로써, 제1장의 규정들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1996년 법에서 가장 양이 많은 제1장은 상당히 자세하게 중재 전반을 거의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다.

8) 여기에서는 지난 7월 초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얻어 확정된 중재법과 거의 흡사한 중재법안을 중심으로 잉글랜드 중재법의 개정방향을 파악해 본다.

9) 제2장에서는 소비자보호 중재, 소액청구중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 우리 중재법과의 비교

1. 중재법의 목적

우리법 제1조에서는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년 법에서는 중재판정부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¹⁰⁾ 강조하고, 이에 따른 분쟁해결의 공정성(fairness)을 주목적으로 한다(제1조(a)항). 이 법에서는 중재당사자들은 합의를 하여 자유로운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party autonomy), 이 합의는 공익(public interest)에서만 제한이 된다(제1조 (b)항). 법원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중재절차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조 (c)항).

1996년 법은 이 법의 적용영역을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제한하면서, 중재지가 이곳이 아니더라도 중재와 관련해서 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중지나,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중재지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아니어도 중재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인 출석, 기타 중재절차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법원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재지가 중재합의에 없거나, 중재지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과 관련이 깊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중재지는 법적 의미가 있는 장소로서, 중재합의, 중재지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 중재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외에는 합의사항,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중재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1996년 법에서는, 규정들을 강행규정과 비강행규정으로 나누어, 강행규정이

10) 국제중재에서 중재인 임명과 관련하여 impartiality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ICC 중재 규칙 제2조에서처럼 중재인 임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때이다. Dominique Hascher, “Practice in Relation to the Appointment, Confirmation, Challenge, and Replacement of Arbitrators”(1995), ICC Bulletin Vol. 6, No. 2, 4.

아닌 사항들은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조절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기관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느냐의 여부는 1996년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만일 다른 법의 선택이 있다면, 비강행규정이 규율하는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본다.¹¹⁾

2.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

우리법에서는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라고 하였다(제2조 제1항).

1996년 법에서는 이 점에서 우리 법과 별 차이 없다(제6조 제1항). 그러나,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중재합의가 다른 합의사항의 일부가 되어 있거나 되도록 한 경우, 다른 합의사항의 불법, 부존재, 효력상실 등으로 인해 중재합의가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의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조).¹²⁾ 또한 1996년 법에서 중재합의는 문서로 되어야 하는데, 서명이 없어도 문서로 된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제5조 제2항), 구두로 된 합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제5조 제3항)¹³⁾ 그러나, 뉴욕협약에서는 문서로 된 합의를 규정하면서 반드시 서명이 있도록 하였다.¹⁴⁾

3. 직소금지

우리법에서는 당사자가 중재계약에 따라야 하며, 중재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11) Union of India v. McDonnell Douglas [1993] 2 Ll. R 48.

12) 중재에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에서도 극히 최근에서야 1심 법원의 판사가 “중재의 독립성에 관한 이론이 확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Harbour Assurance Co., (U.K.) Ltd. v. Kansa General International Insurance Co., Ltd., [1992] 1 Lloyd's Rep. 81; [1993] 3 WLR 42.

13) 이 규정은 Zambia Steel & Building Supplies Ltd. v. James Clark & Eaton Ltd., [1986] 2 Ll.R. 225의 판결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구두계약’의 가능성을 성문화한 것이다.

14)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이행불능의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재계약이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각하될 것이다.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해야 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는 방소항변을 할 수가 없다.¹⁵⁾

1996년 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적법각하하지 않고, 중지(stay)하도록 하였다. 즉, 중재합의의 당사자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타방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법원에 관련 소송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본안문제에 관한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여, 중재판정이 우선적으로 내려져야 한다는 합의가 있어, 이에 따른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이런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하여 중지를 거절할 수 있다(제9조 제5항). 해상사건에서 선박압류가 되었다가, 공탁금, 기타 담보금이 납입되어, 해당선박이 압류에서 해방된 경우에, 중재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해사소송절차가 정지된 경우에, 관련 공탁금, 담보금은 앞으로 내려지게 될 중재판정의 집행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대로 남기도록 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제11조).

4. 중재인의 선정

우리법에서는 중재인 수, 선정방식에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면서, 중재계약에 중재인 선정합의가 없으면, 각 당사자가 1인씩 선정하도록 하여 결국 두 사람의 중재인으로 된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사중재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이 적용된다(제4조 제3항). 대한상사중재원규칙에서는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1인, 또는 3인으로 선정한다(중재규칙 제24조). 우리법에서 상대방이 중재인 선정을 거부하거나, 선정된 중재인을 대체할 이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중재인 선정, 대체를 최고하고, 최고후 7일 이내에 답이 없는 경우,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 법에서는 중재인의 수나, chairman, umpire를 둘 것인지에 관해 당사

15) United Shipping & Trading Co., Inc 와 현대중합복재산업 주식회사,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 (1996) 판례공보 1057.

자가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고, 중재인 수를 짝수로 하자는 합의는 chairman 을 한 사람 더 선정하도록 하는 합의로 본다(제15조 제2항). 중재인 수에 관해 합의가 없으면, 1인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제15조 제3항). 중재인 선정절차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없는 경우, 1인 중재판정부의 경우, 3인 중재판정부인 경우를 구별하고 umpire, chairman 선정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명절차가 실패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8조). chairman, umpire의 차이점은 전자가 당연히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중재인들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면서, 결정, 명령, 중재판정에 참여하는 것이지만(제20조 제4항), umpire는 이런 권한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제21조 (b)항), 다른 중재인들이 결정, 명령, 중재판정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umpire가 이들을 대체하여 1인 중재판정부로서 결정, 명령,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제21조 제4항). umpire의 권한에 관해 중재인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umpire가 단독 중재인이 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중재인의 권한은 법원의 대체 결정 이외에, 당사자들의 합의,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권한을 부여한 중재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이 박탈시킬 수 있다(제23조 제3항). 물론 법원은 중재인 선정, 해임에 권한이 있다(제23조 제5항). 1996년 법에서는 법원이 개입하여, 중재인을 선정, 해임시키는 경우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내에서, 중재절차 개시전이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 이후에만 가능하다(제24조 제2항). 법원이 중재인을 해임시키면서, 중재인의 수당, 비용에 관한 명령을 같이 내릴 수 있다. 중재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사임, 해임으로 인해 생길 보수, 비용문제를 합의할 수 있으며, 중재인의 결원으로 생길 보충 문제에도 합의할 수 있다(제27조). 중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 임명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된다(제27조 제3항).¹⁶⁾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을 중재인으로 정해 놓은 중재계약은

16) 중재판정부의 결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중재심리가 심수 차례까지 이어진 후 거의 끝날 즈음에 중재인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결국 나머지 중재인만으로 마지막 중재심리를 갖고 중재판정을 내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중재당사자가 2명만으로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있다. 한국공공업(주)와 금성전선(주), 대법원 제1부, 1992. 4. 14 판결, 91다 17146, 17153(반소) 상고기각 (판례월보 263호 99)

당사자들이 정해 놓은 중재인이 중재인직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하고, 이행불능이 되는 중재계약이 되어, 중재계약의 상대방이 중재판정부 구성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을 통해 중재인을 선정, 대체하는 규정들인 중재법 제4조의 제4항, 제5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을 특정한 경우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기로 중재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⁷⁾ 이 관례를 음미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중재법상 중재인 임명을 중재계약의 유효요건으로 삼는지를 보아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법에서는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족하고,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인을 특정해 놓은 경우는 중재합의 이외에 중재인 선정절차까지 나아가서, 이것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중재계약에 명시해 놓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중재인 직을 수락하지 않았어도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는 중재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이다.

국제 중재사건에서는 외양상 중재조항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중재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기관인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때에 해당 중재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중재가 제기된 중재인이나, 중재조항의 유,무효를 판단해야 할 법원의 소관사항이지만, 중재인이나 법원 모두 관련 중재조항을 유효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에 제기된 중재사건에서는¹⁸⁾ 중재조항에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ICC, Zurich, Switzerland, in accordance with Swiss law of the Canton of Zurich”라고 하였다. ICC는 파리에 위치하고 스위스의 취리히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ICC의 규칙은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인 데 반해, 취리히 상공회의소의 규칙은 “Rule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이기에 서로 일관성이 없었다. 당연한 절차로서 중재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이 중재계약(합의)이 이행불

17) 논현동 공무원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김정남, 1996. 4. 12 선고, 96다280 판결, (1996) 판례공보 1529.

18) Sigvard Jarvin, Yves Derains, Jean Jacques Arnaldes, *Collections of ICC Arbitral Awards*, 1986~1990, (1993)의 ICC 중재사건 제5294호.

능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ICC의 위치나, 이 기관규칙의 명칭에 상이점이 있지만, 문제의 중재조항은 ICC 규칙을 적용하여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중재를 하기로 하여, 스위스/취리히 법이 본안 문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하여 중재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⁹⁾ 이 밖에도, 실재하지 않은 중재기관을 지정하여 중재조항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법원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표준약관으로 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약관 이면의 중재조항에서 중재는 뉴욕에서 하며, “New York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의 중재규칙에 따른다고 하였다. 나중에,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한 당사자가 분쟁을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중재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기관이 상이하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기관이라고 하여, AAA의 중재관리권한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중재기관이 부재한다고 하여도, 이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기관의 지정이 없이 중재합의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당사자들간에 중재제기 합의가 있는 이상 AAA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AAA의 중재관리권한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측에서는 AAA측이 먼저 자신들이 중재조항에서 지정된 중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때에서야 비로소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중재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⁰⁾

또 다른 사건의 중재조항에서는 “...Any disputes or differenc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hereof which cannot be settled

19) ICC에 제기된 제3460호 사건에서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Geneva”라고 하여 실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중재판정부는 역시 유효한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였다. 자세한 것은 Sigvard Jarvin and Yves Derans, ICC Arbitral Award, 1974-1985, 1990, 참조. 한편, ICC 중재법원의 전 사무총장인 Bond의 논문에서는, 1987년 중재조항에서 “arbitration in Seoul, Republic of Korea, before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Tribunal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고 하여 중재당사자들이 중재기관을 정하지 못하였고, 우리나라 법원에 몇 차례 소송이 제기된 후, ICC가 임명한 중재판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 ICC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일부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Stephen R. Bond, “How to Draft an ICC Arbitration Clause,”(1992) 7 ICSID Rev.-FILJ 153, p.156). 그러나 이 논문에서 Bond가 말하는 한국법원의 사건명이나, 판결일자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장문철, 중재기관과 관련된 중재규칙을 지정한 중재조항의 문제점, (1995) 중재, 여름호, 70쪽, 주석 7번).

20) Warnes S.A. v Harvic International Ltd., [1994] ADRLJ 65.

amicably without undue delay by the interested parties shall be arbitrated in the 3rd country, under the law of the 3rd country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Th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라고 규정하였으나, 이 조항의 ‘제3국(3rd country)’에 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이 불확정적이라고 해서 이 중재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홍콩법원에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제3국은 원계약서에서 ‘Korea’를 삭제하고 대신 기입해 넣은 것이 확인된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도는 양 당사자의 모회사 국적 중 어느 쪽도 아닌 제3국에서 중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넓게 해석하였다.²¹⁾ 이 사건의 Kaplan 판사는 모회사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표준계약서가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잘못 직성되면, 순조로운 중재절차에 장애가 되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면서, 가급적 중재조항이, 명확하다고, 분명하여 이러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²²⁾ 이들 사건들이 중재인이 아닌 중재기관의 규칙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 법원이 제기된 사건에서도 중재인으로 거명된 특정인이 중재인직을 수행 거부하는 경우, 새로운 중재인을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여 중재당사자들이 중재인을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 대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중재당사자들의 합의를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21) Lucky-Goldstar International (Hong Kong) Ltd v Ng Moo Kee Engineering Ltd, [1994] ADRLJ 49.

22) 이 사건의 중재조항에서 말하는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은 ‘대한상사중재원’을 염두에 둔 오역으로서, 이런 비슷한 사례는 제일기선과 건설실업 사건(서울민사지법 83가합7051, 1984. 4. 12 제7부 판결)으로서 문제가 된 중재조항은 “Any dispute arising under this Charter Party to be referred to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Seoul, Korea and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Japan ……”라고 규정하였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은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오기로 파악하고 있다.

5. 중재절차

우리법에서는 중재절차는 당사자들이 정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의하고, 중재법의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중재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법에서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인, 감정인의 심문(제8조), 법원의 협조(제9조) 등의 규정들이 있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서는 제5장의 심문절차, 제6장의 특별신청에 관한 규정들도 중재절차와 일면 관련성이 있다.

1996년 법에서는 중재절차의 기본원칙으로서 중재판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 각자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제33조 제1항 (a)호), 중재가 지체되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33조 제1항 (b)호). 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증거 관련, 절차 관련 합의를 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합의사항에 구속된다(제34조 제1항).

1996년 법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의 대상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으며(제34조 제2항), 중재판정부가 일정시간을 정하여 중재절차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 제3항). 중재당사자나,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들을 병합하거나, 중재심리의 병합을 규정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제2항), 중재대리인은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제36조). 아울러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감정인, 법률 전문가, 평가인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수당, 비용은 중재인의 수당,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제37조).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에 대해 중재비용의 담보를 명할 수 있는데, 그러나 청구인인 자연인, 법인이 UK 내에 살지 않거나, 이곳에서 설립되지 않은 경우, 중재비용의 담보를 명할 수 없다. 중재판정부는 중재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며(제38조 제4항), 진술서, 선서를 받을 수 있다(제38조 제5항). 또한 중재당사자가 합의하면, 중재판정부는 관련 재산의 보전 명령, 중간대금지급(interim payment)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제39조 제2항). 이런 명령들은 본안에 관한 확정 판정의 제한을 받는 것이기에, 본안판정에서 내릴 금액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제39조 제3항). 이러한 권한은 상당히 예민한 것이므로 잘못하면 중재판정부의 월권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중재당사자

의 합의를 얻도록 하였다(제39조 제4항). 중재판정부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고 해도,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청구에 누장을 피우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청구를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제41조 제3항). 또한 중재판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41조 제5항).

6. 법원의 협조

우리법에서는 중재인이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중재인이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중재판정에 필요한 행위를 법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1996년 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중재판정부가 중재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에 필요한 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중재지 법원이 중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지만, 국가기관인 법원이 갖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합의사항을 어기는 당사자에 대한 명령은 법원의 강제력에 의해 준수되도록 할 수 있다(제42조). 이런 맥락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 법원에 제기된 소송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언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제43조 제1항), 법률소송에서도 강제될 수 없는 증인의 출석, 증거서류의 제출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제43조 제3항, 제4항).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갖는 여러 가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제38조)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이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44조 제2항). 일반소송에서 볼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제44조 제3항). 법원이 중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중재진행 중 발생한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할 경우이다.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제45조 제2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률문제에 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제45조 제6항).

7. 중재인의 관할권 판단

우리법에서는 당사자가 중재계약의 불성립, 무효 등을 주장하여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제10조). 그리고 법원에 대해 한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중재절차 정지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²³⁾

1996년 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은 앞부분에 놓아 두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 판단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제30조)이 모델법의 입장과 동일하다(모델법 제16조). 관할권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중재절차 초기에 제기되도록 해야 하고, 늦은 시기에 관할권 부존재를 다룰 수 없도록 하였다(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판단권한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판정부가 본안에 관해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제32조 제2항). 그러나 이런 신청이 있어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8. 중재판정

우리법에서는 중재판정을 내리는 방식에 관해서 중재계약에서 정할 수 있고,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고, 중재인의 의사가 가부동수인 경우 해당 중재합의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며(제11조 제2항),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인의 서명, 날인, 주문, 이유,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제3항), 중재판정은 중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제5항).

1996년 법에서는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는데(제46조 제1항), 여기에서 준거법은 실체법을 말하고,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정하는 범규칙을 말하지 않는다(제46조 제2항, 제3항). 중재판정부는 여러 개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제47조).

23) 광진코리아스크랩 주식회사의 새항고사건, 1996 6. 11 선고, 96마149 결정, (1996) 판례공보 2129.

중재판정은 확인판정, 작위, 부작위 명령, 원상회복 명령, 계약 변경, 취소 등의 명령을 내용으로 한다(제48조 제5항). 중재판정에서는 본안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이자'판정에 관한 내용도 담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중재당사자는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중재판정을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고, 달리 합의한 바가 없으면 법원이 중재판정을 내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당사자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화해한 경우에는 화해한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기록한다(제51조 제2항). 중재판정의 형식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중재지, 중재판정 일자, 발송지, 이송지와 상관없이, 중재절차의 진행지와 중재판정의 중재지가 일치하도록 하였다(제53조).²⁴⁾ 중재판정이 내려진 일자,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런 합의나 결정이 없는 경우, 마지막 중재인이 서명한 때이다(제54조).

중재판정부는 중재인의 수당, 비용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중재판정문을 발송,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제56조 제1항). 이 경우 중재당사자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중재판정을 찾을 수 있다(제56조 제2항). 중재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변경, 추가로 내릴 수 있는 권한에 관해 합의를 할 수 있다(제57조). 이런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계산상의 오류를 시정하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은 양당사자에 기속력이 있고 최종적이지만, 중재당사자들은 이에 관해 항소, 재심을 하여 중재판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제58조).

24) 이 조문은 *Hiscox v. Outhwaite*, [1992] 1 AC 562; [1991] 2 I.L.R. 1(CA)와 같은 경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런던에서 모든 절차가 행해진 후, 중재인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확정적 중간판정(final interim award)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중재판정에 대해 국내법인 1950년, 1979년 잉글랜드 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법원은 해당 중재판정이 1975년 중재법이 적용되는 이른바 "convention award"이기에 1950년, 1979년 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9. 중재비용

우리법에서는 이 사항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서는 제9장 이하에서 중재비용에 관해 관련사항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

1996년 법에서는 중재비용에는 중재인의 수당, 비용, 기타 중재기관 이용료, 중재대리 비용을 포함한다(제59조).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중재당사자는 합의할 수 있으며(제61조 제1항),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에서 진 쪽이 중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사항을 참작해서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의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제61조 제2항). 중재비용을 나누는 방법에 관한 합의는 중재비용 중 회복할 수 있는(recoverable) 부분에만 적용이 된다(제62조). 어느 부분이 중재비용 중 회복가능한 비용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제63조 제1항),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제63조 제3항). 그러나 이런 결정이 없으면, 법원이 중재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판단한다(제63조 제4항). 당사자들이 회복가능한 비용으로서 달리 합의한 바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당, 비용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수당과 비용”이다(제64조 제1항). 무엇이 적절하고 적합한지의 여부는 법원이 일정한 경우를 고려해서 결정한다(제64조 제2항).

10. 중재판정 취소의 소

우리법에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12조), 취소사유는 중재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중재법의 민사소송법 준용규정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다(제13조 제1항). 그러나 중재당사자의 심문이나, 중재판정의 이유 불기재에 관해 따로 합의한 바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3조 제2항).

1996년 법에서는 중재판정이 법원의 집행허가를 받는 경우, 법원의 판결,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제66조 제1항). 중재판정과 관련해서 중재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본안에 관한 관할권 부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중재판정확인, 변경,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제66조 제3항). 중재판정

이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규칙위반(irregularity)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중재판정의 집행을 반대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1996년 법에서는 이러한 규칙위반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으며(제68조 제2항),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환송, 중재판정 취소, 중재판정 무효확인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제68조 제3항). 중재당사자는 중재판정의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제69조 제2항). 중재판정의 항소, 제심과 관련해서 관련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영국(UK) 밖에 거주하는 개인, 영국(UK) 이외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의 경우,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수 없다(제70조 제6항).

11.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우리법에서 중재판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에 중재판정 집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는 국내중재판정이든, 1958년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이든 별 차이가 없다. 이 집행청구소송은 어느 소송과 차이가 없이 민사소송에 따른 모든 절차를 그대로 거치게 되는 것이다.²⁵⁾

1996년 법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은 모두 법원의 허가(leave)를 얻어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허가가 내려지는 방식은 별도의 소송형식이 아니라 중재판정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주장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문 형식을 띠도록 하는 것이다.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은 이 법 제1장, 그리고, 1996년 법이 제정되었어도 여전히 유효한 1950년 법 제2장 (1927년 제네바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에 의할 뿐만 아니라, 이 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과 관례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소송방식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4항, 제104조).²⁶⁾ 따라서 일단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집행되기까지 별도의 집행

25) 손경한,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 (1995) 계간 중재 가을호, 5, 7쪽

청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한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별도의 시간, 비용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

1996년 법의 특색은 비록 뉴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Order in Council 에서 뉴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제100조 제3항). 이러한 중재판정도 간단히, 허가를 얻게 되면 집행이 될 수 있다(제101조 제2항, 제3항).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는 측에서 해당 중재판정이 승인, 집행되어서는 안될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제102조, 제103조).

IV. 맺는 말

우리나라에서 중재법의 개정이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않았던 것은 이제까지 중재법 개정에 큰 필요성을 느낄 정도의 '이용자 세력'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1996년 법이 제정되기까지 현재 가장 우수한 대법관으로서 존경을 받는 Lord Mustill 판사가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1989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985년 모델법을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받아들이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하면서, 잉글랜드 중재법에 관해 향후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몇 가지 세안을 하였다. 그 후 중재법 개정작업은 법무부의 손을 떠나, 런던의 City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법률회사의 변호사들, 해운업, 상품거래인들, 국제, 국내 중재기관에 관계를 맺고 있는 학자, 중재인들에게 넘어갔는데, 이들은 기존의 흐트러진 중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유럽지역으로 '중재산업'을 빼앗기게 될

26) *The Clean Air Company v. Compu-Print Company Limited*, 잉글랜드 법원은 뉴욕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대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잉글랜드에서 집행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1950년 중재법 제2장에 따른 'Foreign Award'도 아니고, 1975년 중재법에 의거한 'Convention Award'도 아니지만, 1950년 중재법에서 일반 국내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편론없이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였다. M. Kerr, "The Enforcement of a Taiwanese Arbitration Award", (1990) 6 Arb. Int. 2.

것이고, 아울러 홍콩, 싱가포르, 호주, 기타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재센터'의 개설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반영하였던 것이다. 결국 개업변호사인 Mariott를 개정안 작성자로 하여 순전히 법률회사의 후원에 바탕한 민간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 사업요구를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받아들여 결국 다시 정부 주도로 새로운 위원회가 결성되어 1996년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영국민의 심성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우리의 경우에는 굳이 '중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고 '분쟁'을 혐오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업이나 기타 인간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분쟁을 '법원'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배려를 국가가 너무나 무시한 것이고, 얼마 전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도, 현재의 중재법은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힘'은 개인, 업계, 더 나아가 '국제중재산업의 유치'라는 큰 목표마저도 생각해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²⁷⁾

이렇게 어딘가 '닥혀 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국가의 배려를 기대할 수 없다면, 중재의 지식을 확산시킬 소명을 지닌, 단체나 기관에서 주도하여 새롭게 '중재법 개정'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현재의 중재법으로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 중재를 이용하여, 법원에 갈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고, 기존 중재법의 틀을 가지고서는 지난 30년간 발달해 온 중재에 관한 새로운 사고도 반영할 수 없어 비효율성, 자원 낭비를 초래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중재법 개정이 진척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를 분명히 살피고, 중지를 모아 관련기관에 새로운 건의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잉글랜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차원에서라도 중재를 알 만한 사람들, 업계가 주축이 되어 중재법 개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27) 국방부가 록히드사를 상대로 대잠조계기 구입과 관련한 분쟁을 ICC에 중재제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이 보인 반응은 이 점에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5. 3. 16, 3. 19일자 참조.